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)이 3월 1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. 이에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, 각 부처,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특히,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.
  - 가.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처리지침(또는 규정)의 조속한 개정
    - 개정된 규정(대통령령)이 9.1일 자로 전면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별 지침(또는 규정)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
  - 나.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 철폐
    -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연구비 집행을 증빙하도록 명시한 바, 대학 등에서 연구자로부터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를 문서(종이영수증 등)로 제출받아 보관해오던 관행은 즉시 폐지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
    - 각 전문기관은 대학 등 유관 연구기관에 추가로 공문을 발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
  - 다. 학생인건비 폴링제의 충실한 시행
    - 동 제도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< 예 시 >
      - ① 과기정통부 과제에 대해서만 학생인건비 폴링을 시행하는 경우
      - ② 학생인건비가 폴링 계정으로 산입된 이후에도 각 과제별 인건비 금액과 참여율이 여전히 남아있어 과제별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정산까지 수행하여 잔액의 반납을 요구하기도 함
    -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'학생인건비의 별도계정 관리 및 정산 면제'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바,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에서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
    - 우리부는 이행 상황을 대학을 대상으로 한 '연구비관리체계 평가'(내년)에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인 만큼,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의 지도·감독도 요청드립니다

붙임 : 1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주요 개정 사항 1부.  
2.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1부. 끝.

##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



수신자 대학, 출연연, R&D관련 부처 및 전문기관 등

행정사무관 **임나리** 연구제도혁신과장 **이재흔** 전결 03/26

협조자

시행 연구제도혁신과-480 ( 2019.03.26. ) 접수 연구관리1팀-5847 ( 2019.03.26. )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  
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 / <http://www.msit.go.kr>  
제도혁신과 (중앙동)

전화 02-2110-1683 / 전송 02-2110-0262 / [oonnari@korea.kr](mailto:oonnari@korea.kr) / 비공개